



# 하동 미라벨아파트

## 입주자 모집공고 (안)



2017. 08. 10

**(주) 미라벨산업개발**

# 하동 미라벨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거 하동군내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7. 7.3)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지속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소형 자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7.3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8.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013.05.31)개정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가점제 없이 추첨제 100%로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자신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미성년자 세 명이상 자녀를 둔자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8.10)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미성년자 세 명이상 자녀를 둔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지속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동군) 거주자로 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하동군)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현재 하동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 신청자중(특별공급/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은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예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도시건축과 0000호 (2017.08.1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읍 읍내리 1184-2 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지상16층, 1개동 63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특별공급 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3,900.00㎡ (아파트 3,900.0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면적-㎡, 세대 )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면적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등)	합 계		계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 주택	2017-0000 -0	84.8934	84A	84.8934	27.5502	112.4436	4.0474	116.4910	62.7312	20	2	2	2	0	14	2
	2017-0000 -0	84.5783	84B	84.5783	27.4232	112.0015	4.0324	116.0339	62.4983	29	2	2	2	0	23	2
	2017-0000 -0	84.4063	84C	84.4063	28.0829	112.4892	4.0241	116.5133	62.3712	10	1	1	1	0	7	1
	2017-0000 -0	66.2393	66D	66.2393	23.3973	89.6366	3.1580	92.7946	49.9469	3	0	0	0	0	3	0
	2017-0000 -0	84.4063	84E	84.4063	27.3798	111.7861	4.0240	115.8101	62.3712	1	0	0	0	0	1	0

※ 주거공용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 1개동)

(단위:면적-㎡, 금액-천원 )

타입 (주거전용 면적기준)	1동 호수 별	공급 세대	층 구 분	해당 세대수	총 분 양 금 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20%)	2차(20%)	3차(20%)	
									계약시	17.9.10	17.9.20	17.9.30
84A	204 - 205	20	2층	2	44,902	178,098	223,000	22,300	44,600	44,600	44,600	66,900
	304 - 305		3층	2	44,902	181,598	226,500	22,650	45,300	45,300	45,300	67,950
	404 - 405		4층	2	44,902	185,098	230,000	23,000	46,000	46,000	46,000	69,000
	504 - 505		5층	2	44,902	188,598	233,500	23,350	46,700	46,700	46,700	70,050
	604 - 1005		6-10층	10	44,902	192,098	237,000	23,700	47,400	47,400	47,400	71,100
	1104 - 1105		최상층	2	44,902	200,098	245,000	24,500	49,000	49,000	49,000	73,500
84B	202 - 203	29	2층	2	44,735	169,265	214,000	21,400	42,800	42,800	42,800	64,200
	302 - 303		3층	2	44,735	172,765	217,500	21,750	43,500	43,500	43,500	65,250
	402 - 403		4층	2	44,735	176,265	221,000	22,100	44,200	44,200	44,200	66,300
	502 - 503		5층	2	44,735	179,765	224,500	22,450	44,900	44,900	44,900	67,350
	602 - 1503		6-15층	20	44,735	183,265	228,000	22,800	45,600	45,600	45,600	68,400
	1602		최상층	1	44,735	191,265	236,000	23,600	47,200	47,200	47,200	70,800
84C	201	10	2층	1	44,644	159,856	204,500	20,450	40,900	40,900	40,900	61,350
	301		3층	1	44,644	163,356	208,000	20,800	41,600	41,600	41,600	62,400
	401		4층	1	44,644	166,856	211,500	21,150	42,300	42,300	42,300	63,450
	501		5층	1	44,644	170,356	215,000	21,500	43,000	43,000	43,000	64,500
	601-1101		6-11층	6	44,644	174,356	219,000	21,900	43,800	43,800	43,800	65,700
66D	1201	3	12층	1	35,035	144,965	180,000	18,000	36,000	36,000	36,000	54,000
	1301		13층	1	35,035	138,965	174,000	17,400	34,800	34,800	34,800	52,200
	1401		최상층	1	35,035	144,965	180,000	18,000	36,000	36,000	36,000	54,000
84E	1603호	1	최상층	1	44,644	191,356	236,000	23,600	47,200	47,200	47,200	70,8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84.8934	84.5783	84.4063	66.2393	84.4063
약식표기	84A	84B	84C	66D	84E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준공 후 분양으로 마이너스옵션품목 선택은 제외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제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입주일 이전에 받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임. 또한,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은 분양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함.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 상기 면적 및 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의 경우 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전원이 무주택이고, ②(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주택공급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 특별공급 공급일정 및 신청자격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장소

일 자	신청시간	당첨자 선정	장 소
2017. 08. 16(수)	10:00 ~ 14:00	16:00	당사 분양사무실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국가유공자 등) /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3항 별표2 관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3항 별표2 관련)

구 분	하동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 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 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순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예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일 : 2017. 08. 29(화) ~ 2017. 08. 31.(목) 3일간 / 시간 10:00 ~ 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 및 신청자격

구 분	계	84A	84B	84C	66D	84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	2	2	1	0	0
다자녀 특별공급	5	2	2	1	0	0
신혼부부 특별공급	5	2	2	1	0	0
합 계	15	6	6	3	0	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신청대상

추 천 대 상 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자), 철거주택 소유자등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공무원,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체육유공자 또는 유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2016.12.13])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정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및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신청자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 신청자가 하동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하여야 함.
  -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 이하	5,630,275이하	5,360,275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이하	6,756,330 이하	,6,756,33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입증서류**

해 당 자 격		소득 입 증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우주택 서약서		•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우주택 서대주 입주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우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일반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경(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세대주 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함)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순위별 청약신청자격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이하 : 추첨제(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총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하동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2017.08.1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 인터넷</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li> <li>- 국민은행이외 청약통장가입자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li> <li>▶ 접수시간 08:00 ~ 17: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일시: 2017.08.24(금)</li> <li>▶ 발표장소: 당사 분양 사무실</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첨제</li> <li>•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li> </ul>		2017.08.18 (금)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 ※ 개요(가정항목, 접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하동군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 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일자에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하동군 및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자(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한자(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li> </ul>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청약통장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li> <li>• 청약통장 (1순위 자에 한함)</li> <li>•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li> <li>※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ul>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접수장소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국민은행 인터넷뱅킹(www.kbstar.com)</li> <li>•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www.ap2you.com)</li> </ul>	전 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banking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금 이상 잔액 유지)</li> <li>•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 : 국민,기업,수협,농협,우리,SC,한국시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나,신한은행(총15개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창구청약: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청약은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하시기 바람</li> </ul>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후 익영업일 2017.08.25.(금)부터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환불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인터넷 청약신청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환불 (단, 청약자 본인의 접수은행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

구분	청약신청금 환불시 구비서류
본인·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부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li> <li>•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선정 및 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함</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li> <li>•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 함</li> <li>•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함</li> <li>• 시공사 건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 입회하에 시공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함 (단,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저총액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총을 우선 배정함)</li> <li>• 주택형별로 일반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 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li> <li>•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li> <li>•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 함</li> <li>•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li> </ul>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 2017.08.24.(목) ~ 2017.09.02.(토) (10일간)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주택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APT청약신청→ 당첨자사실조회
ARS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 → 1 → 3)	• 2017.06.15일 ARS제도 폐지됨
휴대폰 문 자	방 법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기 간	• 2017.08.24.(목)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전화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IV. 계약체결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계약기간 : 2017.08.29(화) ~ 2017.08.31(목) [3일간, 시간:10:00 ~ 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시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공지]
- 계약체결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 납부계좌 안내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경남은행	207 - 0059 - 8124 - 04	(주) 미라벨산업개발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자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은 별도 지급되지 않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li> <li>•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      • 인감증명서 1부(용도:아파트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li> <li>•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자에 한함)</li> <li>•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li>•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모델하우스에서는 일체의 수납을 하지 않음.</li> </ul>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1부</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li> </ul>
부적격통보를 받은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li> <li>-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 포함하며, 특별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가 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하며 소명기간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동군 및 부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도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도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각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60% 용자가 가능하나,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이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중도금,잔금)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7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입주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주자 사전방문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함)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V. 추가선택 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08.10.29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금액

(금액단위:원 / VAT포함)

주택형	확장비용	계약금(10%)	잔금(90%)	확장내용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8,000,000	800,000	7,200,000	거실, 침실, 다용도실, 주방/식당, 드레스실
84B	6,500,000	650,000	5,850,000	거실, 내실, 주방/식당
84C	6,500,000	650,000	5,850,000	거실, 내실, 주방/식당
66D	6,500,000	650,000	5,850,000	거실, 내실, 주방/식당
84E	6,500,000	650,000	5,850,000	거실, 내실, 주방/식당

■ 납부계좌안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207 - 0059 - 8124 - 04	(주) 미래벨산업개발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채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음.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를 위한 물 구배가 없으며, 화분 물 주기 또는 청소 등을 위해 물을 사용 시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예정)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임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확장 계약 후 자재발주 등으로 취소는 불가하며, 전매 시에도 이를 승계 하여야 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제외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타일, 석재> 현관<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알파룸, 드레스룸	바닥난방, 발코니바닥방수, 발코니바닥 배수 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장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벽: 단열 + 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먼처리 천정(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키친장,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주방가전일체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불박이장 세탁실수전, 발코니수전, 환기시설, 냉매배관 보일러	각종 슬리브,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창호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락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 당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이므로 마이너스옵션은 적용되지 않음.

## VI. 주택소유 등 유의사항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일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7.08.10(목)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2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당첨자는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단지 내 상가 등 일체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시설 등은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VII. 마감재 등 유의사항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현장을 보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을 인지함.
- 개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하여야 함.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시 싱크대하부는 별도 마감이 없고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싱크대 벽면과 세대 내부 신발장 및 불박이장등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본공사시 욕조의 뒷면과 바닥, 욕실장뒷면, 욕실천정상부, 주방장뒷면은 타일취부를 하지 않음.
- 발코니확장시 온수분배기의 설치 위치는 비확장시의 위치와 동일하며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발코니확장세대는 인접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수 있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창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발코니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 VIII.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원, VAT별도)

구 분	건 축 감 리	전기감리 전기·통신·소방감리
회사명	거창종합건축사무소	(주)드림기술단
감리금액	114,800,000	1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 시 행 사 )	시 공 회 사
상 호	(주)미래벨산업개발	(주)미래벨종합건설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5,2호(거창읍 송정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48
등록 번호	경남 - 주택2015 - 0049	1제17 -0828호

■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184-2번지 / ☎ 055) 945- 039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